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12
----------	-------

발의연월일 : 2025. 8. 1.

발 의 자 : 서천호 · 김선교 · 최보운
박덕흠 · 이만희 · 임종득
김은혜 · 김예지 · 정성국
추경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양식업권과 그 지분에 관한 사항을 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양식업권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공유자”라 함)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유자가 노령 등으로 더 이상 양식업을 경영하기 어려워 타인에게 양식업권을 이전하고자 하여도 다른 공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 처분에 관한 동의를 거부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갈등과 분쟁 발생 소지가 있음.

이에 양식업권의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이전·분할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청한 경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 없이 그 동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동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수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

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양식업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양식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이전·분할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지분의 이전·분할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동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양식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식업권 지분 이전·분할에 대한 동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두는 수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공유자의 동의)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33조(공유자의 동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양식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이전 · 분할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 청하는 경우 그 지분의 이전 · 분할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 가 발생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동의 요청을 거부하여 서는 아니 된다.</u> <u>⑤ 양식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 식업권 지분 이전 · 분할에 대 한 동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에 두는 수산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 다.</u>
<u><신 설></u>	